

매각대금납입신청

채 권 자 ○○○ 채 무 자 ◇◇◇ 매 수 인 ●●●

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〇〇타경〇〇〇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20〇〇. 〇. 〇. 매각대금납부기일통지서를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그 기일에 납입하지 못하였는바, 재매각기일이 오는 〇. 〇.로 지정되었는데 그 기일에 앞서 매입대금,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합산하여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납입합니다.

아 래

- 1. 매각대금: 금 ㅇㅇㅇㅇ만원
- 2. 지연대금: 금 ○○○만원(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○. ○.까지의 지연이자분)
- 3. 재매각절차비용: 금 〇〇만원
- 4. 합 계: 금 ㅇㅇㅇㅇ만원

20○○. ○. ○. 위 매수인 ●●●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제출법원	집행법원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138조제3호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
기 타	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,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함.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, 그 밖의매각조건을 적용함.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,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함.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함.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함(민사집행법 제138조).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